

중앙선관위, 9월 21일부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관리

=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 =
=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31일)되었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이사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여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동시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여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붙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1부.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새마을금고정관(예)」는 “정관”으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4. 9. 1.까지	일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	토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	법§8
9. 21.부터 '25. 3. 5.까지	토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법§34 법§35 부칙<제 8. 8.> 제2조
9. 22.까지	일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25. 1. 15.까지	수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법§15④
1. 2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법§24의2①
2. 14.부터 2. 18.까지	금화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17.까지	일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관§39
2. 18.부터 2. 19.까지	화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19.부터 2. 21.까지	수금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2. 20.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 22.까지	토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3.	일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5.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③ 법§43
2. 28.까지	금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3.까지	일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4.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 5.	수	투·개표		투표시간 : 오전 7시부터 (협의시각)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 4.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②